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23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2. 22.
발 의 자 : 김동규 의원 외 6인

□ 개정이유

- 2012년도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「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조직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위원회별 소관 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“경제사회위원회”를 “문화복지위원회”로 하고, “도시건설위원회”를 “도시환경위원회”로 변경하고자 함. (안 제2조의2제3호 ~ 제4호)
-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“기획경제국(기획예산과, 세정과, 기업유치과)”을 “기획경제국”으로 통합하고, “지식정보사업소, 외국인주민센터”를 “농업기술센터, 외국인주민센터, 중앙도서관, 감골도서관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”로 변경함.
(제3조제2항제2호나목 ~ 다목)
-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“기획경제국(경제정책과, 녹색성장과, 관광해양과, 생명산업과), 주민생활국, 환경교통국(환경정책과, 청소행정과)”를 “주민복지국”으로 변경하고, “산업지원사업소, 농업기술센터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”를 “문화체육관광본부, 산업지원본부, 여성비전센터”로 변경함. (제3조제2항제3호가목~나목)

-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“환경교통국(녹지과, 시민공원과, 교통정책과, 녹색교통과)” 를 “환경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 으로 통합함.
(제3조제2항제4호가목)
- 특별위원회 구성시 임시 위원장을 “연장자” 를 “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” 로 함. (제8조제2항)
- 부칙으로 이 조례 제2조2 및 제3조제2항의 시행일을 6대 의회 하반기 원구성 시기에 맞춰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, 2012년도 조직개편으로 신설 또는 변경된 부서는 시행일 이전까지 기존 위원회 소관대로 적용토록 적용특례를 둠 (부칙 제1조, 제2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 발췌

- 지방자치법
- 「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3호 중 “경제사회위원회”를 “문화복지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도시건설위원회”를 “도시환경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기획경제국(기획예산과, 세정과, 기업유치과)소관에”를 “기획경제국 소관에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지식정보사업소, 외국인주민센터”를 “농업기술센터, 외국인주민센터, 중앙도서관, 감골도서관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“경제사회위원회”를 “문화복지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기획경제국(경제정책과, 녹색성장과, 관광해양과, 생명산업과), 주민생활국, 환경교통국(환경정책과, 청소행정과)소관에”를 “주민복지국 소관에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산업지원사업소, 농업기술센터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”를 “문화체육관광본부, 산업지원본부, 여성비전센터 소관에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“도시건설위원회”를 “도시환경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환경교통국(녹지과, 시민공원과, 교통정책과, 녹색교통과)”를 “환경교통국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연장자가”를 “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특례) 이 조례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이 조례 시행 당시 「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개편된 조직의 위원회 관할은 개편되기 전의 조직을 기준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상임위원회의 설치)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 3. <u>경제사회위원회</u> 7명 이내 4. <u>도시건설위원회</u> 7명 이내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 2. 기획행정위원회 가. (생략) 나. <u>기획경제국(기획예산과, 세정과, 기업유치과)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<u>지식정보사업소, 외국인주민센터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. (생략) 3. <u>경제사회위원회</u> 가. <u>기획경제국(경제정책과, 녹색성장과, 관광해양과, 생명산업과), 주민생활국, 환경교통국(환경정책과, 청소행정과)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<u>상록수보건소, 단원보건소, 산업지원사업소, 농업기술센터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(생략) 4. <u>도시건설위원회</u> 가. <u>도시건설국, 환경교통국(녹지과, 시민공원과, 교통정책과, 녹색교통과)</u> 나. (생략) 다. (생략)</p> <p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(생략)</p> <p>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<u>연장자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의2(상임위원회의 설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문화복지위원회</u> 4. <u>도시환경위원회</u>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기획행정위원회 가.(현행과 같음) 나. <u>기획경제국 소관에</u> 다. <u>농업기술센터, 외국인주민센터, 중앙도서관, 감골도서관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,</u> 라. (현행과 같음) 3. <u>문화복지위원회</u> 가. <u>주민복지국 소관에</u> 나. <u>상록수보건소, 단원보건소, 문화체육관광본부, 산업지원본부, 여성비전센터</u> 소관에 다. (현행과 같음) 4. <u>도시환경위원회</u> 가. <u>도시건설국, 환경교통국 소관에</u> 속하는 사항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</u>..... ③ (현행과 같음)</p>